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교통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행정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
(제35조의2 신설)

-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 등이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 등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안전복지과	
연 락 처	044-201-3865